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제1조(「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5조(「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안양시 건축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